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CLFA 한국대부금융협회

보도
2025.12.11.(목) 10:00
배포
2025.12.10.(수)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	책임자	팀 장	신동호	(02-3145-8412)
		담당자	조사역	이서연	(02-3145-8419)
	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부	책임자	부 장	심용식	(02-6710-0810)
		담당자	팀 장	최정열	(02-6710-0816)

**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
「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」를 개최합니다.**

〈주요 내용〉

- '25.12.11.~12.17. 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,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대부업자의 **준법의식 제고**를 위한 「**전국 순회 설명회**」*를 개최하여 법규 위반 사례 및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
- * 금감원은 금년 상반기 중 대부업권 대상 업무설명회(3월)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(6월)를 개최한 바 있음
- 금번 설명회는 '25.12.11.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·부산·서울 순 **전국 4개 주요 도시**에서 **지역별 대부업자**(금융위·지자체 등록) 및 **지자체 대부업 담당자**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,
- 법규준수 관련 **유의사항** 및 금융당국의 **민생침해적 범죄 근절 노력**을 함께 전파함으로써, 대부업권의 **경각심 제고**는 물론, **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**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「전국 순회 설명회」 실시 개요

순번	일자	대상 지역	장소
1	12.11.(목) 오전 10시	대구·경북	대구시청 대강당
2	12.12.(금) 오전 10시	광주·전북·전남	광주시청 무등홀
3	12.12.(금) 오후 2시	부산·울산·경남	부산금정구청 대강당
4	12.17.(수) 오후 2시	서울·수도권·대전·충청·강원·세종*	금융감독원 대강당

* 타지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업 담당자도 설명회 참석 가능

1 설명회 개요

- (주최) 금융감독원, 지방자치단체, 한국대부금융협회
- (대상)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,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
- (일정 및 장소) '25.12.11.~12.17. 기간 중 서울·부산 등 4개 주요 도시
- (교육 내용) ① 주요 법규 위반 사례, ②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개정, 「대부업법」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

「전국 순회 설명회」 세부 일정

구분	교육 내용	담당
세션Ⅰ (40분)	○ 주요 법규위반 사례 공유 ○ 업무시 유의사항 교육	금융감독원
세션Ⅱ (60분)	○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의 주요 내용 등을 안내 ○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전파	한국대부금융협회
세션Ⅲ (20분)	○ 「대부업법」의 주요 개정 내용 및 가이드라인	금융감독원

2 설명회 주요 내용

- **(세션Ⅰ 법규위반 사례)** 대부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법규*를 안내하고, 그간 금감원이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** 공유

* 대부업법, 채권추심법(채권추심 가이드라인 포함), 개인채무자보호법,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

** 법정 최고금리 위반(대부업법),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(채권추심법) 등

- 아울러, 최근 금감원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대부업권 일제 검사 실시('25.8.25.~) 및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추진*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,

*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 점검('25.4월 인천), 지자체 대부업체 검사 지원('25.11월 부산) 등

- 대부업권에서도 위규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 제고 등 취약차주의 권익이 침탈되지 않도록 유의 당부

□ **(세션II 개인채무자보호법)** 개인채무자 상환·독촉 부담 완화 등의 동 법 취지와 법령 주요 내용*을 설명하고,

* 추심총량제(7일 7회), 추심유예 요청권(사고, 질병 등 발생시),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

- 특히, 채권추심 업무시 차주의 권익보호 관련 유의 사항*을 강조하는 한편,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전산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노력을 당부

* 매입채권추심업자 지위 상실(등록취소·폐업 등) 시 6개월 이내 개인금융채권 처분, 채무자는 의사전달 가능한 모든 방법(서면·전화·방문 등)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한 점 등

□ **(세션III 대부업법)** 대부업 평판 제고 및 불법사금융 근절 등을 위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,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 「대부업법」의 주요 내용*을 안내

* ①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(개인 1천만원→ 1억원, 법인 5천만원→ 3억원), ②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 상향(지자체→금융위), ③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

- 특히,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한 지자체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사례* 등을 전파하면서,

* (최근 언론보도 내용) ①대부업체(불법사금융업자 자회사인 경우 有)가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연락 온 대부희망자의 DB 수집 후 ②대포폰으로 해당 대부희망자에게 연락(또는 불법사금융업자에 DB 전달), ③법정 최고한도(연 20%)를 상회한 고금리 대출(연 수천%) 후 문자 협박을 통한 부당 추심 등

- 반사회적 대부계약(초고금리 계약* 포함)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, 불법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**되었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됨을 강조

*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(연 60%)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

** (개정 前)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 後) 10년이하 징역, 5억원 이하 벌금

3 기대 효과

-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,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향후에도 금감원은 「전국 순회 설명회」 등 대부업권 대상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, 동 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